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1. 1. 24 규칙 제178호]

일부개정 2011. 5. 27 규칙 제182호
일부개정 2012. 5. 18 규칙 제204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2012. 12. 21 규칙 제211호
일부개정 2013. 5. 16 규칙 제221호
일부개정 2013. 8. 1 규칙 제225호
일부개정 2013. 11. 8 규칙 제230호
일부개정 2015. 1. 1 규칙 제258호
일부개정 2016. 12. 30 규칙 제306호
일부개정 2017. 6. 30 규칙 제319호
일부개정 2017. 12. 28 규칙 제329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7. 12. 28 규칙 제334호
일부개정 2018. 3. 30 규칙 제337호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8. 11. 2 규칙 제344호
일부개정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19. 12. 26 규칙 제374호
일부개정 2020. 12. 29 규칙 제397호
일부개정 2021. 12. 28 규칙 제411호
일부개정 2022. 6. 24 규칙 제417호
전부개정 2022. 12. 29 규칙 제426호
일부개정 2023. 2. 24 규칙 제432호
일부개정 2025. 6. 11 규칙 제46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본청

제1조의2(디지털홍보담당관) ① 디지털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디지털홍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5. 6. 11]

제2조(미래기획실) ① 미래기획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미래기획실에 두는 각 “과”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

1. 기획예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
2. 미래전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③ 미래기획실장 및 미래기획실 소속 각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6. 11>

제3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행정복지국에 두는 각 “과”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

1. 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2. 복지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3. 행복돌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4. 문화관광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5. 체육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6.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7. 민원소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③ 행정복지국장 및 행정복지국 소속 각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6. 11>

제4조(경제개발국) ① 경제개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경제개발국에 두는 각 “과”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2023. 2. 24>

1. 경제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 환경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3. 농업유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4. 축산산림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5. 재난안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

전사무관

6. 건설교통과장: 지방시설사무관

7. 도시건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③ 경제개발국장 및 경제개발국 소속 각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 6. 11>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5조(소장의 직급 등) 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

1. 보건소장: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2. 보건지소장: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다만, 본문에 따른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3. 보건진료소장: 보건진료 전담 지방공무원

②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 6. 11>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6조(소장의 직급 등)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 6. 11>

제4장 사업소

제7조(소장의 직급 등) ① 각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

1. 수도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 휴양랜드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② 각 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5. 6. 11>

제5장 읍·면

제8조(읍장·면장의 직급 등) ① 읍장·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5. 6. 11>

제9조(부읍장·부면장의 직급 등) ① 부읍장·부면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

1. 부읍장: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2.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② 부읍장·부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5. 6. 11>

부칙(2022. 12. 29 규칙 제426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2. 24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6. 11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디지털홍보담당관 <신설 2025. 6. 11>

[별표 2] 미래기획실

[별표 3] 행정복지국 <개정 2025. 6. 11>

[별표 4] 경제개발국

[별표 5] 직속기관

[별표 6] 사업소

[별표 7] 읍·면

[별표 8] 부읍장·부면장

[여기를 클릭하시면 엑셀화일을 보시거나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